

Deloitte.

Tax & Legal Alert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된
제67/2025/QH15호 법인세법 관련 업데이트

2025년7월



2025년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 기간 중, 제67/2025/QH15호 법인세법(이하 "CIT법")이 2025년 6월 14일 공식적으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의견 수렴 및 초안 수정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이번 법률의 통과를 세법 체계의 정비에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CIT세의 과세 및 관리 측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5년 제67/2025/QH15호 CIT 법은 기존 제 14/2008/QH12 호 CIT 법(및 이에 대한 후속 개정: 제 32/2013/QH13 호, 제71/2014/QH13호, 제61/2020/QH14호, 제12/2022/QH15호)을 전면 대체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아래는 Deloitte이 정리한 제67/2025/QH15호 CIT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이다.



전자상거래 사업자 포함을 통한 CIT 납세의무자 범위의 확장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과세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CIT법은 두 가지 유형의 납세의무자를 추가하였다.

1. 베트남에 상설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베트남 내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CIT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외국기업의 **상설사업장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CIT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베트남 기업의 해외 원천 투자소득에 대한 CIT 상계 규정

- ✓ **과세연도 중** 해외에서 사업 및 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베트남 기업은, 해당 해외에서 납부한 CIT를 베트남 내 납부해야 할 CIT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상계 가능한 금액은 베트남 CIT 법규에 따라 산정된 해당 소득에 대한 CIT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기존 규정과 비교해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 ✓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포함규칙(IIR)에 따라 베트남 기업이 추가로 CIT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추가 CIT 역시 CIT법에 따라 베트남 내 CIT에서 상계가 가능하다.



2025년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 (계속)



비과세 소득에 대한 개정 및 보완 사항

- ✓ 특별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임산물, 재배작물, 축산물, 농수산물의 가공을 위해 직접 구매한 경우**,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 ✓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혁신, 디지털 전환 계약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베트남 내 최초로 적용된 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시험 생산 제품의 판매(통제된 시험 생산 기간 포함)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년간의 세금면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 ✓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혁신, 디지털 전환 활동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국내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령한 **후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로부터의 보상금, 탄소배출권의 최초 양도 소득, 그린본드 이자 수익, 그린본드의 최초 양도 소득 등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 ✓ 국가 예산 또는 정부의 투자지원기금으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 역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활동을 제외하고, 부동산 양도 및 투자 프로젝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생산·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됨

CIT법은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투자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단, **현재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규정인 제32/2013/QH13호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는 것만 허용되었으며, 그 **반대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았다. 2025년 CIT법의 변경 사항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무 현실 및 국제적 관행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히 다양한 산업 및 사업 분야에 걸쳐 점점 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 (계속)



일부 손금산입 항목 및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개정 및 보완

1. 손금산입 항목의 보완 사항:

- ✓ 과세연도 중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추가 비용
- ✓ 문화 활동, 자연재해 및 전염병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후원금, 정부 또는 총리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역에 위치한 지방에 대한 후원금,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혁신, 디지털 전환을 위한 후원금
- ✓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혁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출 비용
- ✓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당기 중 발생한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지만**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사용된 일부 비용
- ✓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도 활용되는 공공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비용**
- ✓ 탄소중립 및 넷제로(Net Zero) 목표 달성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 ✓ 기업의 사업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총리의 결정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설립된 특정 기금에 대한 일부 기여금
-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비현금 결제 증빙을 구비한 비용(단, **정부가 별도로 정한 특수한 경우는 제외함**)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와도 일치함
- ✓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과 직접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에 대해 발생하였으나, 전액 공제되지 않았고 환급 대상도 아닌 VAT

2. 손금불산입 항목의 보완 및 조정(법제화) 사항

- ✓ 투자 단계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중 이미 투자 자산(자본적 자산)의 가치에 포함된 금액 및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중 민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추가된 항목에는, 관련 업종별 법령에서 정한 지출 요건이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2025년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 (계속)



중소기업(SMEs)에 대한 CIT 세율

- ✓ 연간 총수입이 3bil VND 이하인 기업에는 15%의 CIT 세율이 적용된다;
- ✓ 연간 총수입이 3 bil VND 초과 ~ 50 bil VND 이하인 기업에는 17%의 CIT 세율이 적용된다;
- ✓ 적용 가능한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입은 직전 과세연도의 총수입이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CIT법은 일부 특정한 경우를 우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자가 자회사이거나 관계회사이며, 그 관련 당사자들이 우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 (계속)



우대 사업 활동에 대한 보완 및 수정

번호	보완된 사업 분야	적용 가능한 CIT 인센티브
1	법률에 따라 규정된 전략 기술의 적용.	✓ 4년간 면세, 이후 9년간 50% 세금 감면;
2	사이버보안 제품의 제조 및 서비스 제공,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의 제조 및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술 산업법에 따른 전자장비 제조, R&D, 반도체 칩 제품의 설계·제조·포장·테스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개발	✓ 15년간 CIT 10% 우대세율 적용, 최소 투자 자본금이 6,000 bil VND 이상 이고 특별 장려가 필요한 중요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15년 추가 연장 가능
3	법률에 따라 규정된 핵심 화학 산업 제품 및 핵심 기계공학 제품 제조	
4	섬유·의류, 가죽·신발, 전자 및 정보기술(반도체 설계 및 제조 포함), 자동차 생산 및 조립, 기계공학 분야를 위한 산업 지원 제품 제조	✓ 4년간 면세, 이후 9년간 50% 세금 감면 ✓ 5년간 CIT 10% 우대세율 적용
5	과학기술 및 혁신법에 따른 과학기술 기업	✓ 인센티브 인증서/확인서가 수익 또는 소득 발생 이후에 발급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가 발급된 연도부터 인센티브 적용
6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타 디지털 기술 제품 생산	✓ 2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세금 감면;
7	중소기업(SME) 지원을 위한 기술 인프라 투자·운영, 스타트업 보육기관, 공유 사무공간 운영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름)	✓ 10년간 CIT 17% 우대세율 적용



2025년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 (계속)



우대 CIT 적용 지역에 대한 조건의 보완 및 수정

번호	수정/보완 대상 우대 지역	적용 가능한 CIT 인센티브
1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경제구역	✓ 4년간 면세, 이후 9년간 50% 세금 감면;
2	총리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집중형 디지털 기술 구역	✓ 15년간 CIT 10% 우대세율 적용
3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제구역	✓ 2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세금 감면; ✓ 10년간 CIT 17% 우대세율 적용
4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산업구역	더 이상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님



CIT 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 규모 조건 변경 사항

- ✓ **최소 자본금 6,000 bil VND 이상의** 제조업 분야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되던 CIT 인센티브 규정이 삭제되었다;
- ✓ **최소 자본금 12,000 bil VND 이상의** 제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에는 기술심사를 요구했으나, 이제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규정한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도록 기술 요건이 수정되었다;
- ✓ 투자법에 따라 특별한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사례가 보완되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등록된 총 투자자본의 자금 집행 일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년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 (계속)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의 규정 및 요건에 대한 개정 및 보완 사항

1. 확장 투자로 간주되는 사례가 보완되었으며, 오염 저감 또는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확장 투자에 포함된다.
2. 기존 프로젝트가 여전히 인센티브 적용 기간 내에 있는 경우, 확장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추가 소득은 기존 프로젝트와 동일한 세금 인센티브를 남은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추가 소득을 별도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
3. 기존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 확장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추가 소득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면세 및 세액 감면)은 적용 가능하나, 세율 우대는 적용되지 않다:
 - ✓ 등록된 확장 투자 자본의 집행이 완료된 시점에,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가 정부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 ✓ 확장 투자 집행 완료 시점의 고정자산 취득원가가 확장 이전의 총 고정자산 취득원가 대비 최소 20% 이상 증가한 경우;
 - ✓ 등록된 확장 투자 자본 집행 완료 시점의 설계 생산능력이 확장 이전의 설계 생산능력 대비 최소 20% 이상 증가한 경우.



기업의 과학기술개발기금 설립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보완 사항

- ✓ 기금 적립 한도율이 연간 과세소득의 10%에서 20%로 상향되었다;
- ✓ 미사용 기금으로 인해 회수되는 CIT에 대한 이자율은 회수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된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해당 국채가 없는 경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적용한다. 이자 계산 기간은 2년이다;
- ✓ 합병, 통합, 분할, 분사, 소유권 전환 또는 기업 형태 변경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한 기존 기업의 경우, 신설된 기업 또는 합병·통합·분할·분사·전환 이후의 수취 기업은 기존 기업의 과학기술개발기금을 승계하며, 해당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2025년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 (계속)



향후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될 주요 규제 사항들

1. 정부는 일부 경우에 대해 **매출액 기준으로 CIT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사례를 규정할 예정**이며, 이는 특히 영구적 고정사업장(있는 경우)의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베트남에서 발생시키는 외국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수행하는 자본 양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 의무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국제연합(UN)에서 소득 원천지국(베트남 포함)에 보다 **유리한** 과세권을 부여하는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할 경우,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3. 정부는 2025년 CIT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예정이다.

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 ✓ 2025년 CIT법은 실질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업종별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법령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갖춘 견고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적인 규정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이며,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이 추가로 명시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 ✓ 기업의 입장에서, 개정된 CIT법이 도입한 변화에 비추어, 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세무 및 투자 계획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규제 변화가 현금흐름, 수익성, 세금 인센티브, 투자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이번 개정 CIT법이 기업에 미치는 가시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은 세무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사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준법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무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eloitte Vietnam의 지원 사항

저희 자문팀은 기업 과세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기업을 신속히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규정 업데이트

새로운 CIT법 관련 규제 변경 및 요건에 대해 회사에 시의적절한 업데이트를 제공함



준수 검토

해당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여 회사의 법규 준수 수준을 평가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잠재적인 리스크를 분석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공함



내부 통제 절차 개발 지원

기업이 관련 활동에 대해 세무 의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경사항에 따라 내부 통제 절차를 개발하거나 검토하는데 지원함



교육 세션 및 워크숍을 통한 지원 제공

개정 및 보완된 법규에 따라 관련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세션 및 워크숍을 조직함.

공식적인 CIT법의 내용은 국회의 승인을 거쳐 공표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공표 당시 가장 최신의 세부사항을 기반으로 하며, 공식적으로 법에 따라 공포된 최종 법령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및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Deloitte Vietnam의 전문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Contact us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SG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

*Deloitte's Tax & Legal Alert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Contact us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Pham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Vu Minh Ngoc

Tax Partner
+84 28 7101 4645
ngocmv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vietnam)

*Deloitte's Tax & Legal Alert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